

# 定 款

2019. 03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관리협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관리협회(Korea Sports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KSFMA))”(이하 “협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체육 시설 및 스포츠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 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사업 및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한 스포츠 문화 및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전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2.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및 진단에 관한 사업
3. 안전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사업
4. 체육 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5. 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협회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협회의 정관에 의한 의결권
3. 협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참여권

② 협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단체 또는 개인은 협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회원은 근무지 및 주소지 변경 시 협회 사무처에 이 사실을 유선,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수)**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 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회장으로 간주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협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정족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등 각종 협회활동에 참석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 및 회원은 그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회 일시 및 장소, 출석이사의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4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 칙

**제39조(협회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협회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협회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주사무소)**

협회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16, 509호에 둔다.